

재보험과 재재보험



박 현 수

<대한재보험(주)순해사정담당역>

1. 재보험의 의의 및 기능

보험의 모든 분야에는 위험이 있으며 이러한 위험은 그 규모가 매우 크거나 성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보험회사 스스로 유지하기가 힘든 경우가 상당히 많으며 그 일례로는 점보여객기를 들 수가 있다.

이러한 거대한 위험에 대하여 보험회사는 자기가 인수한 위험중에서 자기가 소화할 수 있는 금액만 보유하고 나머지는 다른 보험회사나 재보험회사에 넘기고 있다.

이와같이 어느 한 위험의 금액이 보험회사가 유지할 한도를 넘어서는 때에는 보험회사는 다시 보험에 가입하여 위험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절차를 재보험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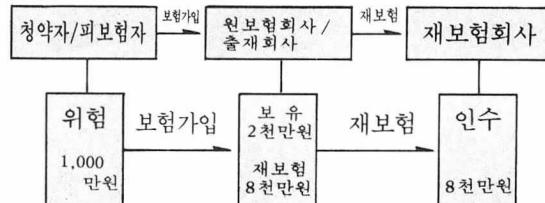
보험회사가 인수한 위험을 감당할 수 없을 때에 재보험은 그 위험에 대한 인수능력을 제공함으로써 보험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보험회사의 기능은 잠재적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를 보호하는 것이며 재보험회사의 기능은 원보험회사에 대한 유사한 보호가 된다.

재보험거래는 원보험회사가 위험의 일부를 재보험회사에 넘기고 재보험회사는 이를 인수하는 협정을 말한다. 위험의 일부를 넘기는 원보험회사를 출재회사라고도 하며 재보험회사는 원보험회사가 넘기는 위험을 인수하는 보험회사를 말한다.

재보험계약은 원보험회사와 재보험회사간의 쌍무 협정이므로 피보험자는 재보험계약에서는 아무런 권리を持つ 못한다. 그러므로 사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는 원보험회사에 대하여만 손해를 청구하며 재보험자에게는 보험금의 청구가 불가하다. 재보험거래

를 도해하면 다음과 같다.



2. 재보험의 방법

재보험의 주요방법으로는 임의재보험과 특약재보험 있다.

가. 임의재보험

임의재보험이란 원보험회사가 위험의 일정액을 보유하고 나머지를 재보험회사에 넘기는 경우 매 위험별로 재보험자가 위험을 인수하는지의 여부를 묻는 재보험방법이다. 원보험회사는 재보험회사에게 위험에 대한 모든 실제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재보험자가 위험을 인수할 것인지 결정하도록 한다.

나. 특약재보험

임의재보험에서는 위험별로 재보험회사가 위험의 인수여부를 결정하지만 특약재보험에서는 원보험회사가 위험을 재보험회사에 넘기면 재보험회사는 이를 의무적으로 인수하는 협정을 말한다.

재보험자는 특약의 범위내에서 모든 위험을 의무적으로 인수해야 하며 또한 원보험회사도 위험을 의무적으로 재보험회사에 넘겨야 한다.

재보험자는 매 위험별로 심사를 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위험이 특약의 범위에 해당되는 한 재보험자는 위험이 좋건 나쁘건간에 인수하여야 한다.

특약재보험의 형태는 비례재보험과 비비례재보험

의 2가지로 분류되며 비례재보험에는 비례재보험특약(Quota Share Treaty)과 초과액재보험(Surplus Treaty)이 있다.

(1) 비례재보험

○ 비례재보험특약 (Q/S Treaty)

비례재보험특약은 원보험회사가 인수계약의 일정비율을 보유하고 나머지는 재보험회사가 이를 인수하는 것이다.

○ 초과액재보험 (Surplus Treaty)

출재사의 보유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재보험회사가 인수할 것을 합의한 것이다. 초과액재보험을 말할 때는 20 또는 30 Line으로 한다. 이것은 출재회사의 보유액(Line)의 20 또는 30배를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어느 위험에 대한 원보험회사의 보유액을 ₩100,000이라고 가정하면 1Line=₩100,000 이 된다. 이 특약이 14 Line이라고 하면 한 위험에 대하여 ₩14,000,000 까지 재보험에 넘길 수 있다. 이 경우 ₩14,000,000의 재보험은 Surplus를 여러 개로 설정할 수 있으며 처음으로 원보사의 보유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한도를 1st Surplus라 하며 1st Surplus를 초과하는 한도를 2nd Surplus라고 한다.

(2) 비비례재보험

○ 초과손해액재보험 (Excess of Loss)

손해발생시점을 기준하여 출재회사의 일정손해액 초과시 재보험회사가 책임을 지는 것이다. 따라서 비례특약에서는 손해발생시 출재회사와 재보험회사가 자기 보유액에 비례하여 보상하지만 비비례 재보험은 비례하여 책임을 지지 않고 일정금액이하의 손해액은 출재회사가 보상하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만 재보험자가 부담하게 된다.

출재회사는 과거의 손해를 토대로 하여 재보험자의 부담액에 일정한도액을 설정하며 출재사는 기본적으로 소액사고 및 일정범위내의 보험금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출재사의 기본부담액은 Priority 또는 Deductible이라하여 Priority 초과 최초의 일정금액까지 손해액의 한도를 1st Layer, 1st Layer 초과 일정손해액의 책임한도를 2nd Layer라 하며 손해액의 규모에 따라 재보험자의 부담을 제한함과 동시에 출재사의 보험료부담은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오늘날 보험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피보험자의 손해예방에 대한 정신이 고취되어 있고 보험자의 위험관리기술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과거의 부담보험금액에 비례적 책임을 지는 비례적 재보험방법에서

손해액구분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비비례적 재보험방법으로 재보험방법이 전환되어가는 추세에 있다.

3. 재재보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보험이란 원보험회사가 인수한 위험을 재보험회사에게 분산시키는 제도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재보험회사는 자기가 인수한 위험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유지하기 힘든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재보험회사는 자기가 인수한 위험중에서 일부를 다시 다른 보험회사에 넘기게 되는데 이것을 재재보험이라 한다.

이와같이 보험에서는 원보험회사가 인수한 위험을 소화시키는데는 몇번이고 재보험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한재보험(주)가 국내 유일의 전업 재보험회사로서 국내 원보험회사가 인수한 위험에 대하여 보험종목별로 재보험을 인수하고 있으며 동사의 보유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다시 국내 원보험회사 및 해외재보험회사에 대하여 재재보험을 하고 있다.

화재보험의 예를 들면 국내 원보험회사가 대한재보험에 재보험을 하면 대한재보험은 출재원보험회사를 제외한 여타 원보험회사에 재재보험을 하며 국내보험회사들의 보유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런던로이드 보험시장을 비롯한 유수한 재보험회사에 재재보험을 하고 있다.

현재 외국사와 대한재보험(주)와 체결하고 있는 특약한도액은 5천만불로서 국내보험회사들의 최고보유한도액 3천만불 초과금액에 대해 5천만불까지 자동적으로 보험담보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보험금액이 8천만불 이상되는 물건에 대하여는 개개물건별로 외국시장에 담보능력이 있는 재재보험자를 선택하여 임의 재보험방식에 의한 재보험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재보험에 있어서 위험분산과 관련,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담보력과 국제적 신용이 좋은 외국재보험자를 선택하는 일이다.

보험사고 발생시 해외시장으로부터 보험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게되면 국내 원보험회사는 재정적으로 커다란 타격을 받게 될 것이며 국내 주요 고액물건의 위험에 대한 담보가 불확실해짐으로써 사업영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원보험, 재보험 및 재재보험은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